

제28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회의 2022. 4. 25.(월)

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

자치행정위원회

#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## 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향토문화유산 지정·보호·보존·관리와 향토사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향토문화 계승·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·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 ~ 제7조)
- 라. 관리자 지정 및 보존관리 등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9조 ~ 제14조)
- 마.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향토사교육 실시와 교육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5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문화관광과
- 라. 입법예고 : 2022. 4. 14. ~ 4. 20. (7일간) / 의견없음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·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.

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상 및 해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9조에는 관리자 지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, 안 제15조와 제16조에는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향토교육과 주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에 따라 2015년 별지 2호서식을 개정한 이후, 1995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현재의 행정환경과 맞지 않는 용어 및 내용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, 향토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향토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붙임 : 남양주시 향토유적 현황 및 관리 1부.

## 참고1 남양주시 향토유적 현황 및 관리

번호	명칭	소재지	주요내용	지정일
1	의안대군사당 (향토유적 4호)	경춘로1360번길 9-3(평내동151-4)	조선 태조 이성계의 이복동생이며 개국공신으로 제1차, 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고 영의정이 된 의안대군의 사당	86.04.10.
2	남선선생묘 및 신도비 (향토유적 7호)	별내면 청학리 산77	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여러 지방 관직을 지내면서 선정을 베풀어 부임지마다 송덕비가 세워진 남선선생의 묘와 신도비	86.04.10.
3	조말생신도비 (향토유적 8호)	수석동 61-1	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자 서예가로 태조1년 장원급제하였고 대학자로 글씨가 매우 뛰어난 조말생의 신도비	90.11.02.
4	윤천뢰묘역 및 신도비 (향토유적 5호)	별내동 산58-1	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효종8년 충청도 병마절도사가되어 지방의 군무를 담당한 윤천뢰묘역 및 신도비	04.12.24.
5	이춘원선생묘역 및 신도비 (향토유적 6호)	화도읍 북한강로 1109-8 (금남리 769)	조선 중기 문신,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1597년에는 광양현감으로 남원을 포위한 왜군과 싸운 이춘원선생의 묘역 및 신도비	09.08.13.
6	기계유씨 묘역 및 신도비 (향토유적 9호)	화도읍 수레로 995 (차산리 775-4)	조선 전기 문신인 유강, 조선중기 문신인 유성증, 유황, 유철의 묘역 및 신도비	11.01.11.
7	전주류씨 묘역 (향토유적 10호)	순화궁로 548-1 (별내동)	조선 중기 문신인 류의, 류영경, 류열, 류정량, 류심의 묘역 및 신도비	11.12.15.
8	남구묘역(2기) (향토유적 11호)	별내동 1062	남구는 개국공신 남재(南在)의 증손자로, 간성군수와 강릉진관병마첨절제사를 역임한 남구 묘역	13.01.24.
9	견성군이돈묘역(1기) (향토유적 12호)	별내동 산152-1	조선 제9대 성종임금의 7번째 왕자. 강원도 간성에 유배되어 사사(賜死)된 견성군 이돈 묘역	14.09.30.
10	충숙공 권절 정려 (향토유적 13호)	순화궁로 501 (별내동 2184-45)	조선전기 충신 권절의 충절을 인정하며 1708년(숙종34년) 내려진 정려	17.09.28.
11	충숙공 권절묘(2기) (향토유적 14호)	순화궁로 458-81 (별내동 산 212-1)	조선전기 문신으로, 단종을 향한 충절로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꼽히는 충숙공 권절 묘	19.12.19.
12	남양군 도열공 홍경주 묘(1기) (향토유적 15호)	송능1길 11-7 (진건읍 송능리 산17-3)	중종반정의 일등공신으로 딸은 중종의 후궁 희빈홍씨, 훈구파 일원으로 기묘사화를 일으킨 남양군 도열공 홍경주의 묘	19.12.19.
13	고령신씨 봉재공파묘역 (향토유적 16호)	일패동 산12-1	조선 500년에 걸쳐 세거하며 조성된 단일 가문 묘역으로 선산에 중종묘를 세우는 조선의 종법과 사대부 묘제의 다양성, 시제사 등 유·무형의 민속적 가치가 있음	21.02.18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#### 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안

#### 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12조(경비지원 등)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 부담한다. 다만,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## 1. ~ 3. 생략

-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임.

-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‘권고적 형식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, 정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.

※ 현재 향토유적과 관련한 예산액(201-02 공공운영비)은 연 20,000천원

### 4. 작성자

문화관광과장 강혜숙

## □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0호(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) 일부개정 2022. 01. 21.

제34조(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)

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·제작·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·제작·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. [개정 2019.12.24, 2020.12.4] [[시행일 2020.12.10]]

1. 역사, 문화, 예술, 사회, 경제, 종교,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
2. 지역의 역사·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,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
3.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, 제3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 [개정 2017.4.6, 2019.12.24]

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(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9.12.24]

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. [개정 2019.12.24]

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[개정 2019.12.24]

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.

[본조제목개정 2019.12.24]